

수원지방법원 2023. 8. 31 선고 2023나7155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3. 8. 31 선고 2023나71551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3. 4. 27 선고 2022가단422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

담당변호사 배종희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수

변론종결 2023. 8. 17.

판결선고 2023. 8. 31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가단422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2,7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.

재판장 판사 이국현, 판사 김용태, 판사 이은희